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009758(본소), 2019나2009765(반소) 판결
[토지인도 · 지상물매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2009758(본소), 2019나200976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1666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L

2. O

변론 종결 2019. 8. 22.

판결 선고 2019. 10. 3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합16662(본소), 2018가합 16679(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U 대 3,415m² 중,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제1심 공동피고 M, N, P는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7, 88,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4m'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ㄱ)부분 94m² 토지를 인도하고,

2)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M, N, P와 공동하여 2,668,660원 및 2018. 9. 1.부터 별지 도면(ㄱ)부분 94m²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연 1,274,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1) 피고 L에게,

원고 A는 807,763원, 원고 B는 4,038,818원, 원고 C은 807,763원, 원고 D, E는 각 1,211,6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O에게,

원고 A는 538,509원, 원고 B는 2,692,545원, 원고 C은 538,509원, 원고 D, E는 각 807,7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피고들)

가. 본소에 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원고들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에 관한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M, N, P, Q, R, S, T에 대한 부분은 제외1)).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조광국

판사이은상

별지

1)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 K, Q, R, S, T 사이에서는 당심에서 한 2019. 5. 1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M, N, P는 항소제기 후 당심 변론준비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되었다.